

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5년 8월 26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국 무 위 원
국 토 교 통 부 장 김 윤 덕

● 법률 제21034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운영에”를 “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”로 한다.

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

제57조의2제1항 중 “제56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”로 한다.

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) ① 실손의료공제(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계약의 공제계약자, 피공제자,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“요양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,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3(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·보안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 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1조 중 “조합원”을 “조합원(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)”으로, “공사”를 “공사 또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9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,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,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